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조사중해결)

□ 민원 제목 : 울주군 관내 경로당 TV수신료 일괄 면제 신청 요청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울주군 마을회관(경로당) 시설의 TV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면제를 해주고 있으나 시설 사용자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라 개별 신청이 어렵고 번거로워 타지자체 처럼 복지 시설은 TV 수신료 일괄 면제되도록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경로당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 면제 미신청 경로당 파악 및 신청 조치 검토 후 일괄 신청 완료함
- 울주군 관내 전체 등록 경로당 413개소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 등록 면제 여부를 확인 후 2025. 3. 31. 미등록된 30여 개소를 일괄 면제 등록 조치하고, 2025. 5. 14. 신규로 2개소를 추가로 등록 면제 요청하여 전체 경로당(413개소)에 대한 방송 수상기 등록 면제를 완료하였다. (유선확인)

□ 사실관계

- 이 민원 관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주군 경로당 시설의 TV 수신료 일괄 면제 신청 사업
 - 사 업 기 간 : 2025. 2. 25. ~ 2025. 5. 30.
 - 울주군 경로당 현황 : 413개소 (2025. 5. 30.현재)
- 이 민원 추진 상황
 - 2025. 2. 3. : 경로당 TV 수상기 일괄 등록 면제 관련 상담
 - 2025. 2. 25. : 경로당 TV 수상기 등록 면제 협조 공문 수신(보훈노인과3179호)
 - 2025. 2. 28. : 경로당 TV 수상기 등록 면제 협조 공문 발송
 - 2025. 3. 31. : 경로당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 등록 면제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2025. 5. 14. : 경로당 TV 방송 수상기 추가 등록 면제 요청 공문 발송
- 2025. 5. 22. : 대한노인회를 통한 경로당별 개별 신청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
- 2025. 5. 30. : TV 수신료 일괄 등록 면제 완료 확인
 - 기존 등록 경로당 확인(411개소), 신규 등록 2개소 경로당 추가 면제 신청, 등록 경로당 413개소 방송 수상기 등록 면제 완료

□ 관계법령 등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조사자 의견

- 이 민원은 울주군이 직접 운영·관리 하고 있는 경로당의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울주군에서 일괄 면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5. 2.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함께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직원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상담을 하였으나 시 보훈노인과와 울주군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신청에 대한 협조의 내용만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일괄 면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2025. 5. 22.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 이에따라, 피신청인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 413개소를 조사하여 2025. 5. 30. 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방송 수상기 일괄 등록 면제 된 것을 KBS한국방송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이 해결되었기에 이를 안내하고 조사 중 해결로 종결 처리 하고자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심의안내)

□ 민원 제목 : ○○아파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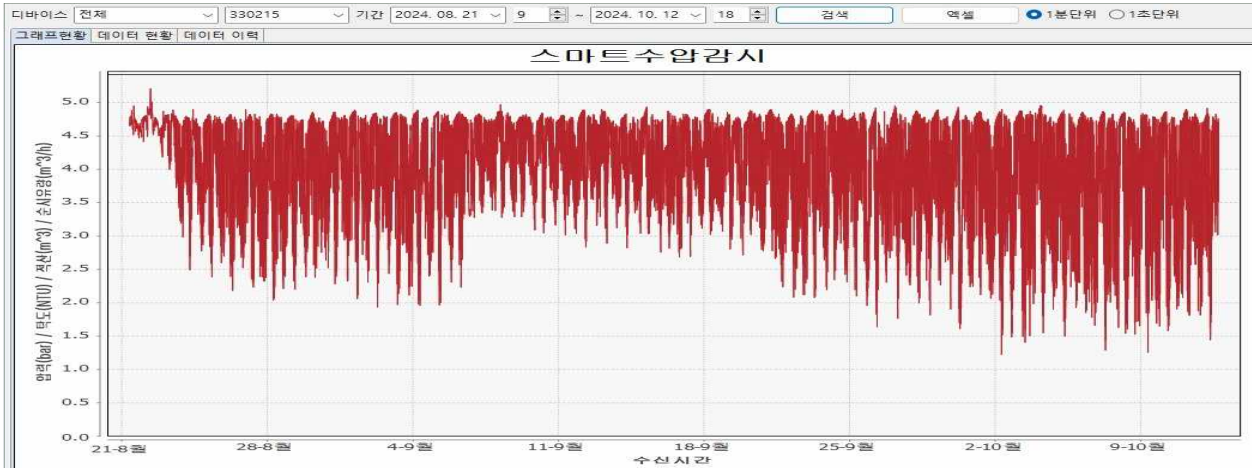
□ 신청 원인

- 울산 남구 신정4동 소재 ○○아파트는 2024. 6.경부터 3~5층의 수압이 약해 정상적으로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는 2024. 10.경 스마트계량 수압계를 설치하여서 한 달 뒤부터는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수압이 약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원인이 인근 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옥상 물탱크 철거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치가 필요하다.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이 민원 아파트 현황
 - 울산 남구 중앙로 ○○번길 ○○
 - 수도 인입 일자 / 전체 공급자 수 : 1987. 7. / 50세대
- 이 민원 아파트 수압 및 설계(기준) 수압
 - 측정수압 : 대부분 정상범위(1.5~5.0 kgf/cm²)
 - 설계기준 : (1.53~7.55 kgf/cm²)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 이 민원 아파트 인근 누수 및 수압 곤란 민원 접수 처리 현황
 - '24. 7. 3. : 급수불량 신고 접수 후 육안 확인 ⇒ 정상
 - '24. 8. 3. : 급수불량 신고 접수 후 수압 측정 ⇒ 정상(3.5kgf)
 - '24. 8. 16. : 급수불량 신고 접수 후 수압 측정 ⇒ 정상(4.5kgf)
 - '24. 8. 19. : 스마트 수압계 설치(8.21~10.12.) ⇒ 정상범위
 - '25. 3. 4. : 고충민원 접수
- 이 민원 아파트 인근 가압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이 민원 아파트 공급 관망현황(관경, 시설현황 등) 자료 : 인입급수관 40mm
- 수압측정 내역(8. 21. 09:00 ~ 10. 12. 18:00)



□ 사실관계

- 민원 발생 경위

-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은 2024. 6.경부터 1~2층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3~5층까지는 수압이 약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3~4년 전 옥상 PE물탱크를 철거하고 직수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인근 재개발 지역 공사 시작 후 수압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역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지역으로 이 민원 아파트는 ○○○○○○○, 재개발 지역은 ○○○○○○○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 3~4년전 이 민원 아파트에 설치된 옥상 PE물탱크 철거 후 2024. 5.까지의 수압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나 계량기 입구의 수압 측정 결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 관계법령 등

- 「수도법」 제2조(책무), 제38조(공급규정)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급수설비의 소유권), 제19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 조사자의 의견

- 신청인은 재개발 지역의 공사로 인한 수압 불량이 원인이라고 하나, 이 민원 아파트와 재개발 지역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지역으로 각각의 블록은 단일화된 유량계를 통하여 들어온 수돗물이 블록 내에서만 연계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블록에서 다른 급수 불량 민원이 발생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계량기 입구에서 육안 및 수압계 측정 3차례(2024. 7.3., 8.3., 8.16.) 그리고 스마트수압계 측정 1차례(2024. 8. 21.~10.12.)를 실시한 결과 물공급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 동수압 범위($1.53\text{kgf}/\text{cm}^2 \sim 7.55\text{kgf}/\text{cm}^2$)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2024. 6.경부터 2025. 3.경까지의 수용가 조정내역을 보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 또한 이 민원 아파트의 해당 블록인 ○○○○○○의 순시유량과 적산유량을 보면 물 사용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는 물 공급량이 적고 그 외 시간에는 물 공급량이 많으며 일자별 공급량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29조에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세대당 1톤(비상지하수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3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 건축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29조에는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 이내의 고가수조 저수량을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아파트의 경우 1인 1일 평균 사용수량을 50~160ℓ 또는 200ℓ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있는 광주광역시의 수도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을

살펴보면 급수소요량산출기준에는 이 민원 아파트에 해당하는 30~80세대수의 경우 옥내인입 급수관(계량기구경)의 관경을 80mm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이 민원 아파트의 인입급수관은 40mm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급수소요량산출기준의 일반주택일 경우 관경 40mm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9~19세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아파트의 급수관경은 기준에 부족하다.

- 「수도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에는 급수 시설 설비 중 울산광역시 소유는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 매설된 배관시설이며, 그 외는 수도사용자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급수관 분기지점에서는 정상적인 수압으로 급수가 되는 것으로 보여 계량기 이후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민원 아파트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 결국 이 민원 아파트의 경우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정상적인 수압으로 급수가 됨에도 3~5층에는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근 재개발 지역의 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며, 인입급수관의 관경이 기준보다 부족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 후 직결급수로 전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안정적인 물 사용을 위해서는 관경 교체나 지하저수조 또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 등) 사용으로 내부 부식 및 녹물이 나올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교체 공사비의 80% 이하(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며, 세척·갱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이하(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60만 원)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자 한다.

□ 결론 : 심의안내